오메프라졸 특허분쟁 반전

「오메프라졸」제제의 특허분쟁이 혼전을 거듭하면서 가열되고 있다. 특허청이 종근당의 경구용 「오엠피」정의 제조기술이 아스트라의 「로섹」캅셀 제법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내린데 이어 아스트라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라메졸」캅셀의 품목제조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아스트라와 국내 기업간의 「오메프라졸」제제를 둘러싼 특허분쟁이 반전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오메프라졸 허가상황

상 품 명	제조기업	허가일자
로섹캅셀	유한양행	1998. 2.15
라메졸 캅셀	한미약품	1992. 9. 1
오멜캅셀	동국제약	1992.11.24
오엠피 정	종근당	1992.12. 1
라메졸 좌약	한미약품	1993. 6.17
동신오메프라졸 캅셀	동신제약	1993. 7.21
오메드 정	선경제약	1993. 9.20
울프로 정	보령제약	1993.10.11
리절트 정	중외제약	1993. 9. 6

이같은 결과들은 이에앞서 9월12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이 아스트라가 종근당을 상대로 제기한 「오엠피」정의 품목제조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아스트라와의 특허분쟁에서 불리했던 국내 기업들의 위치가 유리하게 반전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따라 종근당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던 「오엠피」정의 제조·판매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과 본안소송에 적극 맞대응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4/10/24>